

시 방 서

적용 제품 : 도로표지병

[해당 시방서는 시공 방법의 개선을 통해 사전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정 이력

| 개정날짜 | 개정사유 | 개정번호 |
|----------|--------|--------------|
| 25.04.09 | 시방서 신설 | 시방서_도로표지병_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도산업(주)

도로표지병 설치 시방서

1. 일반 사항

1.1 목적

이 시방서는 도로표지병의 설치 순서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시인성을 확보하고 차량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도록 안전하게 설치하며,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표지병의 시공 방법에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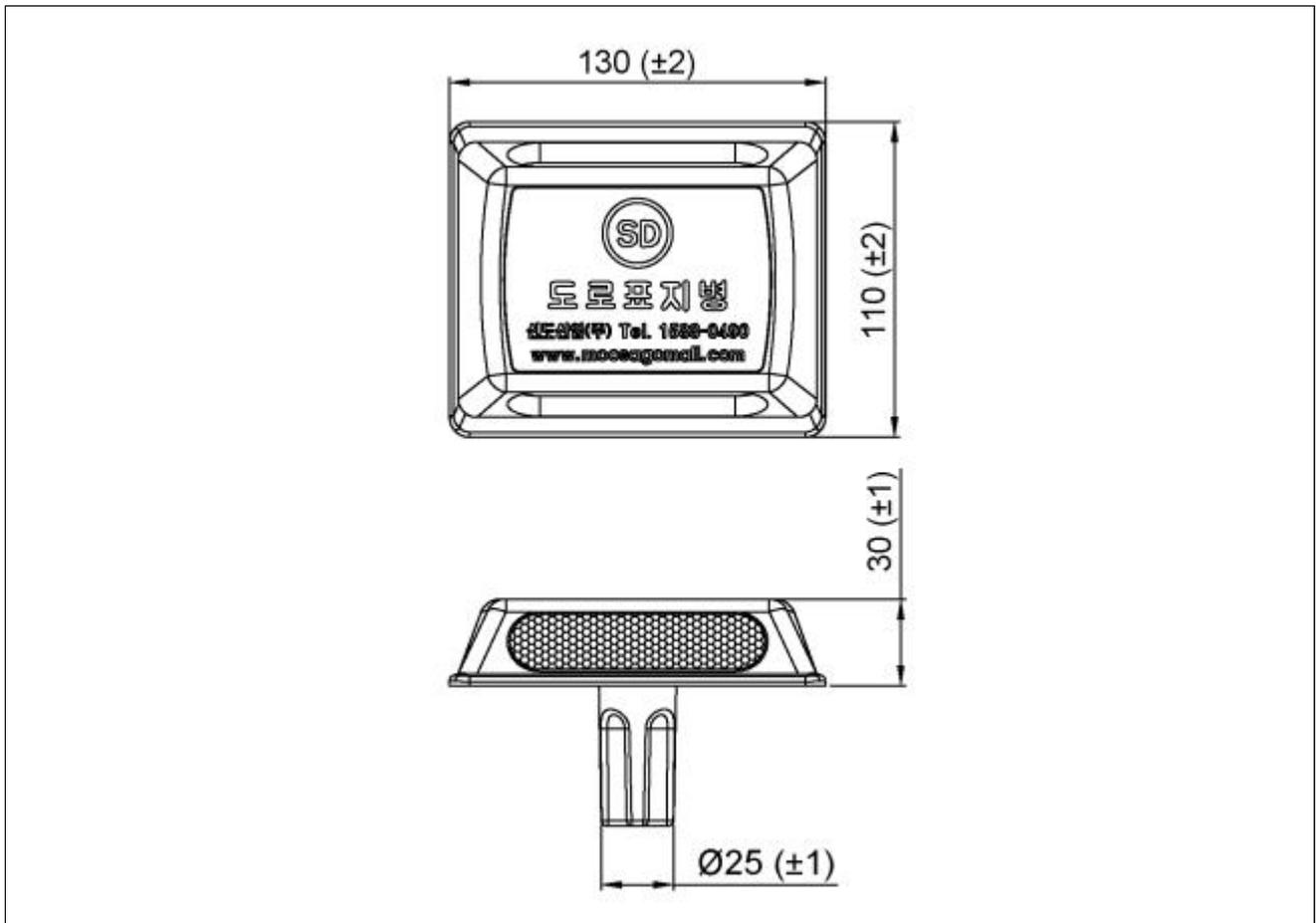
2. 제품의 명칭 및 규격

가. 명칭 : 도로표지병

나. 규격 : W130×L110×H30 (mm)

다. 재질 : 몸체(알루미늄) / 반사체(플라스틱)

3. 제품 구조도



4. 설치관리.

4.1 일반사항

- 가. 현장 감독자와 현장을 답사, 정확한 시설물 위치를 선정하며, 시공 시 문제가 발생 될 요소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 나. 설치 현장의 시공 전, 중, 후 사진을 찍어 사후 관리한다.
- 다. 현장에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특별 시방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4.2 안전조치

- 가. 시공에 들어가기 전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를 한다.
- 나.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4.3 시공방법

- 가. 도로표지병은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한다.
- 나. 시공자는 발주처의 설계 사양에 따라 시가지도로, 지방도로, 전용도로, 편도1차로 등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간격에 맞추어 설치 위치를 도로에 표시한다.

| 구분 | | 설치 간격 | 비고 |
|-------------|-------|-----------|--------------------------|
| 직선부 | 시가지도로 | 1N(8m) | · 공학적 판단에 의해 조정가능 |
| | 지방도로 | 1N(13m) | · 공학적 판단에 의해 조정가능 |
| | 전용도로 | 1N(20m) | · 공학적 판단에 의해 조정가능 |
| | 편도1차로 | N/2 | · 공학적 판단에 의해 조정가능 |
| 곡선부 | | N/4 ~ N/2 | · 반경의 크기에 따라 공학적 판단하에 설치 |
| 진·출입연결로 고어부 | | N/4 | · 미국 FHWA 기준 적용 |
| 교차로 좌회전 차로 | | N/2 | · 미국 FHWA 기준 적용 |

※설치 간격의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 1편 시선유도시설편’을 따른다.

- 다. $\Phi 28$ 드릴을 사용하여 약 50mm 깊이로 천공한다.
- 라. 천공 위치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로표지병용 접착제(EPOXY)를 넣는다.
- 마. 도로표지병을 자연스럽게 눌러 넣고 각도를 맞춘다.
- 바.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약 15~20분간 외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사. 시공한 도로표지병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다.
- 아. 주변을 정리하고 안전조치 시설물을 철거한다.

5. 검사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처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6. 유지관리

도로표지병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유지는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원칙으로 한다. 지침서에 없는 경우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6.1 점검

점검은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의 이상여부를 점검한다.

6.2 보수

가. 사고 및 자연재해로 파손 또는 변형되어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복구한다.

7. 기타

7.1 기록

도로 표지병이 파손 또는 변형이 발생한 경우,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기록하고 개선에 반영하도록 한다.

- 1) 점검 보수 시 기록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다.
- 2) 시공상 특이점 등을 기록한다.

7.2 설치관련 협조

이 지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